

하 동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625호 2024. 7. 8.(월요일)

고 시

- 하동군 고시 제2024-156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1
- 하동군 고시 제2024-157호 지적기준점 성과(변경)고시 2

입법예고

- 하동군 공고 제2024-1032호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3
- 하동군 공고 제2024-1034호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8

일반공고

- 하동군 공고 제2024-1029호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협조 1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고시

하동군 고시 제2024-156호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. 7. 3.

하 동 군 수

- 허가연월일 : 2024. 7. 3.
- 점·사용의 목적 : 금양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토지점용
- 점·사용의 장소 및 면적 :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139 / 432.2㎡
(인근 : 금남면 대치리 678-2)
- 점·사용의 기간 : 2024. 07. 03. ~ 2029. 07. 03.
-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 : 하동군수(관광진흥과)

하동군 고시 제2024-157호

지적기준점성과 (변경)고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(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)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2024. 7. 5.

하 동 군 수

기준점		지적위성좌표/ 지적좌표	원점	평면좌표		표고	소재지	설치일 (관측일)	표지 재질	비 고		
명칭	번호			위도	경도						X	Y
지적도 근점	W4198	변경전	중부	35-14- 09.324 6	127-4 4-01.8 463	293455.442	266799.243	464.316	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888-4	2022-05-20	철재	세계측 지계
		변경후		35-14- 09.324 6	127-4 4-01.8 463							

★측량성과 보관장소 : 하동군청 민원과

하동군 공고 제2024-1032호

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
2. 제안 이유
 - 귀향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외에 고향 방문,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향 희망자의 귀향 의지 제고
 - 귀향인 및 귀향 희망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
3. 주요 내용
 - 귀향 희망자의 군 정착을 위한 초청 홍보 행사 지원사업 신설(안 제5조제1항제9호)
 -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
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하동군(참조 : 지역활력추진단, 전화 055-880-2429,
FAX 055-880-7159, e-mail haemal26@korea.kr)에게 **【별지 서식】**에 따라 그 의견을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서식】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붙임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【별지】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규칙)안 내용	의 건	비고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지원사업)”을“(지원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귀향 희망자의 군 정착을 위한 초청 홍보 행사 지원사업

-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귀향인 및 귀향 희망자이며,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9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귀향 희망자의 군 정착을 위한 초청 홍보 행사 지원사업</u>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지원대상은 귀향인 및 귀향 희망자이며,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하동군 공고 제2024-1034호

하동군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 법규명 :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2. 제안 이유 :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3. 주요 내용 : 협의회 정의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, 표창에 관한 사항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하동군(참조 : 기획예산과, 055-880-2243, FAX 055-880-2019, snoopy720@korea.kr)에 **【별지 서식】**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【별지서식】**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붙임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동지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①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재난 구호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
3. 보건의료·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5. 협의회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「하동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】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규칙)안 내용	의 건	비고

**「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」 관련
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**

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제공일자 : 2024. 7. 5.(금)
- 제공받은 기관 : 행정안전부
- 제공의 법적 근거
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2호·제3호, 제17조 제1항 제2호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제1항 및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1조 제1항
- 이용 목적
 - 행정기관(중앙부처, 교육청, 지방자치단체)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·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 -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
- 개인정보 보유기간
 - 2024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(2024. 11월 예정)
- 공고 기간 : 2024. 7. 5.(금) ~ 7. 19. (금) (15일간)
- 공고 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